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87호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338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
○ 조 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 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14
○ 조 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규 칙

○ 규 칙 제9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
○ 규 칙 제91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25
○ 규 칙 제915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27
○ 규 칙 제916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29

공 고

○ 공고 제2016-399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늘솔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31
○ 공고 제2016-400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해오름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34
○ 공고 제2016-4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7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6-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40

고 시

○ 고시 제2016-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3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42
○ 고시 제2016-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4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338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농수산개발과장”을 “농축수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세무1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 2, 별지 3 및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

[별지 1]

[별지 제3호 서식]

징수포상금신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세무2과장

발신 : (인)

구 분		징수기간	건 수	금 액			포상금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합 계								
소 계								
체납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	탈루·은닉 세 원							
	미 등 기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 정 발 전							
	세 입 증 대							

※ 첨 부 :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별지 2]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담 당	납세자보호관	구청장
수 신 : 세무1, 2과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귀 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 · 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 · 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예상)과세처분
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조
사중지 또는 시
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
사중지 내용 또
는 시정요구·소
명요구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3]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담당	납세자보호관
수 신 : 세무1, 2과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업장)			전 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	
------------------	--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4]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담당자

○○담당

세무1,2과장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 원 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고
충
내
용의
견
및
처
리
내
용

첨부 : 결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1, 2과장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등 조례 7건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3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2명의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격요건)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3조의3(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적이”를 “목적 또는 위치가”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19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수임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감면할 수”를 “감면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은 경우 전액 감면 할 수”로 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활동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제3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사용·수익료 면제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례 반영(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개정(제19조의 2)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수익료 면제 조항 신설(제31조)
- 상위법 근거조항 명시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4조, 제11조, 제19조의2, 제26조, 제29조, 제37조, 제3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만수지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34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1999.08.03. 본 조례가 제정(제546호)되어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4. 6.14일자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 그간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집행 및 회계 운용이 2005. 8. 1. 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 됨.
- 따라서, 불필요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문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조례 제13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5,000원	

더하는 금액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너. 입간판 (신설)	4,000원	
더.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입간판 수수료 조항 신설 및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서식 개정으로 옥외광고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별표 개정
 - 입간판 수수료 조항 신설 (별표 6)
- 법령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구 별지서식 개정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생년월일로 교체 (별지 제5호 서식)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9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0”를 “17:00”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9:00”를 “17:00”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불)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폐기물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및 멸실 등으로 재판매·위조여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삭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하며, 적발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폐기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 행위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위반 일시·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가정 및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배출시간을 앞당겨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종량제봉투 판매관련 환불규정 및 과태료 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하여 주민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쓰레기수거시간을 19시~24시를 17시~24시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 (제2조)
- 종량제봉투 판매관련 환불규정을 명확화(제8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 준용 및 지급 지역제한 규정 삭제(제9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규정 신설(제10조)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91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1997.07.28 본 규칙이 제정(제425호)되어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근거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전문 폐지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915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1996.01.13. 본 규칙이 제정(제381호)되어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근거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전문 폐지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16년 3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916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1996.01.13 본 규칙이 제정(제380호)되어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고 근거 법령 및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전문 폐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399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면적(㎡)	시설율(%)	
변경	늘솔길 공원	근린공 원	논현동 738-8 일원	561,641	172,198. 22	30.7	561,641	172,245. 22	30.7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늘솔길 공원	- 시설을 및 녹지율 변경 - 기 정 : 30.7% - 변 경 : 30.7%	- 교통약자층의 편의를 위한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무장애),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함으로서 산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시설조서의 오기 정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늘솔길 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m ²)	구성비(%)	부지(m ²)	구성비(%)	
총 계	561,641	100.0	561,641	100.0	-
기반시설	37,452	6.66	37,612	6.69	증160.0
도 로	25,599	4.55	25,567	4.55	(감32.0)
광 장	11,853	2.11	12,045	2.14	(증192.0)
조경시설	75,854	13.51	51,849	9.23	감24,005.0
휴양시설	3,535	0.63	6,828	1.22	증3,293.0
운동시설	31,119	5.54	40,119	7.14	증9,000.0
교양시설	14,636	2.60	23,262	4.14	증8,626.0
편익시설	9,272.22	1.65	9,245.22	1.65	감27.0
유희시설	-	-	3,000	0.54	증3,000.0
관리시설	330	0.06	330	0.06	-
녹지 및 기타	389,442.78	69.35	389,395.78	69.33	감47.0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공원녹지과(☎453-614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논현고잔동

주민센터 (☎453-558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6-400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해오름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 · 공고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해오름 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해오름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면적(㎡)	시설율(%)	
변경	해오름 공원	근린 공원	논현동 775-1 일원	218,159	59,008	27.1	218,159	64,046	29.4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해오름 공원	- 시설을 및 녹지율 변경 - 기 정 : 27.1% - 변 경 : 29.4%	-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미활용 공원부지 확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 - 시설조서의 오기 정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해오름 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m ²)	구성비(%)	부지(m ²)	구성비(%)	
총 계	218,159	100.0	218,159	100.0	-
기반시설	24,347	11.16	45,380	20.08	증21,033.0
도 로	10,478	4.80	22,634	10.37	(증12,156.0)
광 장	13,869	6.36	22,746	10.43	(증8,877.0)
조경시설	4,858	2.23	-	-	감4,858.0
휴양시설	2,065	0.95	1,507	0.69	감558.0
운동시설	269	0.12	269	0.12	-
교양시설	235	0.11	235	0.11	-
편익시설	-	-	2,805	1.29	증2,805.0
유희시설	-	-	-	-	-
관리시설	5,017	2.30	-	-	감5,017.0
기타시설	22,217	10.18	13,850	6.35	감8,367.0
녹지 및 기타	159,151	72.95	154,113	70.64	감5,038.0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7층 공원녹지과(☎453-614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논현고잔동

주민센터(☎453-558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4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0, FAX 453-2769)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6-14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추가 재산 압류 예고 통지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거주불명 등록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3. 11. ~ 2016. 3. 25. (15일간)
3. 대상업소 내역

업종	업소명	체납자	업소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법적근거
			거주지		
자유업	**할인마트	정**	하촌로**번길 **-(만수동)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위생법제3 조 및 101조
			연수구 만우금로 ***, ***동 ***호 (연수동, **아파트)		

4. 공 고 내 용 : 재산 압류[시중은행(수협은행)]의 예금 및 그 이자) 통보 및 체납액 412,200원 납부 독촉

5. 고 지 사 항

- 과태료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오니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대상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급여 등)에 대하여 추가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는 2016.3.22.까지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납부 가능)

6. 기 타 사 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고지서 발급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6-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3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3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축과(☎453-278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3.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9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서창 제3주차장 공사
- 사업 규모
 - 토지면적 : 2,223.1㎡
 - 건축규모 : 건축면적 1,771.31㎡, 연면적 10,627.86㎡ (주차장 162대)
 - 세부면적

(단위:㎡)

구 분	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	10,627.86	1,771.31	1,771.31	1,771.31	1,771.31	1,771.31	1,771.31
주차면적	7,440.33	88.22	687.08	1,351.10	1,771.31	1,771.31	1,771.31
판매 및 근생	3,187.53	1,683.09	1,084.23	420.21	-	-	-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최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 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9	주차장	2,223.1	2,223.1	최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6-26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6. 3. 11.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분서 참조”

2016. 3.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 통 · 반 구역 조정

○ 총괄현황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 동 구	657	3,672	+2	+8	659	3,680	2개통
장수서창동	47	234	+2	+8	49	242	8개반 증가

○ 세부내역 : 장수서창동

조 정 전				조 정 후				비 고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7	소 계		83	27	소 계		75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 반영 및 통반 구역조정
	8	서창방산로158번길 7-2, 7-8,7-10,7-14,15-8,25-8 서창남로 16-20, 16-26 서창남순환로 215번길 20	83		8	서창방산로158번길 7-2, 7-6, 7-8, 7-10, 7-14, 7-16, 15-2, 15-7, 15-8, 15-14, 15-16, 20, 24, 25-8, 25-11 서창남로16-1,16-2,16-20, 16-26,16-28,16-34,16-38, 16-41, 16-42 서창방산로168번길 7,19,21 서창방산로99	75	
33	소 계		113	33	소 계		121	통반 구역조정
	4	인천서창LH 808동	113		4	인천서창LH 808동 서창남순환로10번길 15-5 서창남순환로10번길 21-11 서창남순환로10번길 53 서창남순환로215번길 20 서창남순환로216번길 35	121	
신 설				48	소 계		380	신규입주 공동주택 통반 신설
					1	서창동 3블록 301~302동	86	
					2	서창동 3블록 303~304동	120	
					3	서창동 3블록 305~306동	86	
					4	서창동 3블록 307~308동	88	
신 설				49	소 계		362	신규입주 공동주택 통반 신설
					1	서창동 3블록 309동	80	
					2	서창동 3블록 310동	80	
					3	서창동 3블록 311동	80	
					4	서창동 3블록 312동~313동	122	

통 · 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일자:2016.3.11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57	3,672	2	8	659	3,680	
구월1동	35	188	0	0	35	188	
구월2동	41	211	0	0	41	211	
구월3동	37	202	0	0	37	202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7	241	0	0	47	241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1	156	0	0	31	156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5	211	0	0	35	211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47	234	2	8	49	242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0	0	0	33	210	
논현고잔동	31	176	0	0	31	176	